

2023년 진료정보교류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안내

(재)한국보건 의료정보원에서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적극 확산 하기 위하여 「2023년 진료정보교류 사업 우수사례 공모전」을 다음과 같이 추진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.

2023. 10.

*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(Health Information Exchange)

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민(환자)에 대하여 본인의 진료기록을 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송수신하여, 의사가 환자 진료에 참조할 수 있도록 교류하는 서비스

1 공모전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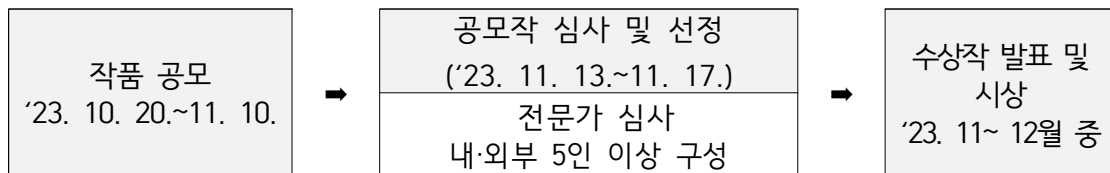
- (공모전명) 2023년 제3회 진료정보교류사업 우수사례 공모전
- (공모주제)

주제	응모 대상	공모 부문
의뢰사례	의료기관 종사자	-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한 의뢰 시 의료기관 업무 효율화, 운영 개선 사례 -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한 의뢰 시 환자 만족도 증대 및 편의성 경험 사례 등
회송사례	의료기관 종사자	-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한 회송 시 의료기관 업무 효율화, 운영 개선 사례 -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한 회송 시 환자 만족도 증대 및 편의성 경험 사례 등
대국민 대상 편의 사례	대국민 (환자)	-진료정보교류 서비스를 이용한 대국민(환자) 및 가족의 이용 수기 -진료정보교류 서비스를 통한 진료 편의성, 만족 경험 등 우수사례 -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이용을 통한 신속한 진료 대응 등 수혜 사례

- (참가자격) 의료기관 종사자 및 진료정보교류서비스 이용자
(진료정보교류를 통한 의뢰-회송 경험 有)

2 신청 및 접수

- (공모기간) '23. 10. 20.(금) ~ 11. 10.(금) ※ 마감일 23시 29분까지 접수 가능
- (접수서류) 홈페이지(<https://mychart.kr>) 내 양식 다운로드 작성·제출
 - 접수 서류 종류 : ① 응모신청서,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, ③ 공모전 작성 양식
 - 형식 : 한글파일(A4 5매 이내, 굴림, 12p, 줄간격 160%) 압축 후 제출
 - 파일명 : [의료기관명/대국민 구분] 진료정보교류 우수사례 공모_제출자 성명.zip
- (접수방법) 제출서류와 작품을 전자우편으로 제출
 - * 전자우편(이메일): mediex@k-his.or.kr
- (공모문의) (재)한국보건 의료정보원 콜센터 1666-7598, 마이차트 질문하기 게시판
- 공모전 일정



- * 공모작 수, 공모작 수준 등에 따라 심사일정 및 수상작 수는 조정될 수 있음
- * 우수사례집 보건복지부 마이차트 (<https://mychart.kr/>) 공지

○ 기타 참고사항

구분	URL
마이차트 공지사항	https://mychart.kr/portal/community/notice_view.do?no=1007824 ※ 마이차트 공지사항에서 지난 공모전 수상작을 볼 수 있습니다.

3 심사 안내

추진 과정	주요 내용
작품 공모(응모 기간) '23. 10. 20.~11. 10.	■ 의뢰사례, 회송사례, 대국민 대상 편익 사례 3개 부문 공모 ■ 공모작품의 온라인 접수(서류 및 작품 접수)



심사 ~'23. 11. 17.	전문가 심사 (100%) ■ (심사방법) 내·외부 심사위원 (5명 이상) 심사 ■ (점수집계) 심사항목당 각 20점, 총 100점으로 점수 산정 후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의 고득점순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 ■ (심사기준) ①주제 적합성 (20%), ②충실성(20%), ③현실성 및 활용 가능성(20%), ④구성 및 전달력 (20%) ⑤창의성(20%) ※ 심사항목 당 각 20점, 총 100점으로 구성 ※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수상 제외
---------------------	--



수상작 발표 및 시상 '23. 11월 ~12월	■ 수상작 발표 및 시상 관련 개별 통보 ■ 수상작 마이차트 우수사례집 게시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4 시상 및 활용

- (시상 규모) 총 420만원
 - 총 15점(대상 3점, 우수상 3점, 장려상 9점)
 - * 공모작 수, 심사기준, 공모작 수준 등에 따라 수상작 수는 조정될 수 있음
- 시상(안)

주제	수상	훈격 및 포상금액		시상수
의뢰사례	대상	보건복지부장관상	500,000	1
	우수상	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상	300,000	1
	장려상	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상	200,000	3
회송사례	대상	보건복지부장관상	500,000	1
	우수상	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상	300,000	1
	장려상	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상	200,000	3
대국민 대상 편익 사례	대상	보건복지부장관상	500,000	1
	우수상	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상	300,000	1
	장려상	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상	200,000	3
총 계			4,200,000원	15점

- 공모전 수상자 15명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세 공과금 제한 후 현금 형태로 지급 예정
- (수상작 활용) 수상작은 우수사례집 발간 후 ‘마이차트’에 게시
 - * 보건복지부 마이차트(<https://mychart.kr/>)> 참여마당> 공지사항
- 우수사례집 발간, 언론홍보 등에 사용될 수 있음

5 유의사항

- 응모자는 공모 접수 시 응모신청서와 작성 양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- 응모자(의료기관 종사자·이용자)는 세 분야 중 한 가지 분야에 대하여만 응모 가능하며, 중복 응모는 불가합니다.
- 제출물은 제출물 양식을 준수해야 합니다. 제출물 양식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를 누락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, 분야별 주제에서 벗어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모든 응모작은 타 공모전에 출품되지 않은 응모자 본인 순수 창작물에 한합니다.
- 응모작은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,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한은 보건복지부와 (재)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진료정보교류부에 귀속됩니다.
- 타 공모전 당선작 또는 타인의 저작물 및 표절·모방 작품 등의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와 같은 사실이 수상 후에 확인되었을 경우, 수상 취소 및 시상 내역을 환수 조치합니다. 또한, 이와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 등 모든 법적인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습니다.
- 제출된 작품의 초상권, 저작권, 지식재산권, 재산권, 대여권 등 관련 사항은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. 또한, 제출된 작품에 대한 제3자로부터 법적인 소송 및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.
- 선정 작품 수는 응모 현황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당선작은 진료정보교류사업 우수사례집(가제)으로 발간될 수 있으며, 이외의 다양한 사업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.
- 상금의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.
- 그 외 전반적인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내부 방침을 따라야 합니다.

[보건복지부장관상 관련 유의사항]

※ 아래 사항에 따라 포상이 제한될 수 있음

□ 추천 제한

1) 수상자가 공무원인 경우

가.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

-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
- 징계 또는 불문경고(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) 처분을 받은 자
 - 경징계(감봉·견책)가 사면되었거나,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,
 - 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(제1호~제14호)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(주요비위)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

◆ 주요비위 : 「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(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)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

1. 금전, 물품, 부동산,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
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(橫領), 배임(背任), 절도, 사기 또는 유용(流用)한 경우
 - 가. 「국가재정법」에 따른 예산 및 기금
 - 나.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예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른 기금
 - 다. 「국고금 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
 - 라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
 - 마. 「국유재산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「물품관리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
 - 바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
 - 사.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1의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

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3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
4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
5.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
6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·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
7.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(이하 이 조에서 “소극행정”이라 한다)
- 7의2.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(소극행정은 제외한다)
8.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
9. 성 관련 비위 또는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

10.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
11.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
12.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
13.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
14.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

○ 수상자가 국민인 경우

※ “최근 3년 이내”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3년을 말함

예) 2023년 행사 : 2020. 1. 1. ~ 추천일

가.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

- 최근 3년간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10조 및 같은 법 「시행규칙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
- ‘임원’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
나. 「공정거래 관련법」 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

-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
- ※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-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

다.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
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
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

※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라.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

-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
- 건강보험 허위·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,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

※ 처분이 진행 중(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)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%내지 10% 범위 내에서 감점함

- ‘임원 등’은 대표, 원장,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

마. 보건복지 주요정책·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

-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·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

바. 건강보험,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

- 건강보험,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

사.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상이 부적합한 경우